제140회 거창군의회 <임 시 회>

조 례 안 상 정 (조례 11건)

거 창 군

--- 목 차 ---

의 안 번 호	건 명	페이지
2007 ~ 26	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	3
2007 ~ 27	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	7
2007 ~ 28	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	26
2007 ~ 29	거창군 6.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0
2007 ~ 30	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37
2007 ~ 31	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	51
2007 ~ 32	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	56
2007 ~ 33	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	61
2007 ~ 34	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・운영 조례안	67
2007 ~ 35	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	74
2007 ~ 36	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82

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07 ~ 26

제를	출연됩	일일	2007. 9. 18.
제	출	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「공직자윤리법」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,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변경: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
- 나.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(안 제2조)
-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
-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
-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- 다.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(안 제3조)
- 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
-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라. 위원회의 회의(안 제6조)
 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 - 위원 본인 및 본인과 친족의 관계,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 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함
- 마. 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(안 제9조)
 -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연차보고서를 제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
 - ○「공직자윤리법」제8조, 제8조의2, 제9조, 제17조제1항, 제20조의2, 제21조, 제22조, 제24조부터 제29조
 -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제15조의2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, 제19조,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그 밖에
 - (1)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 - (2)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직자윤리법」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2조(구성) ①거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
 - 1.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인
 - 2.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과 군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3조(기능 및 관할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.

- 1. 「공직자윤리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
- 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
- 3.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승인
- 4.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- ②위원회의 관할은 군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

정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,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,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.

- 제4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- ②거창군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.
 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되다.
 -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1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
 - 2.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
 - 3.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
 - 4.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
 -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 - 1. 위원 본인과 관련이 있는 사항
 - 2.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
 - 3.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

-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 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.
- 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- 제7조(위원회의 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 - ②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와 담당자로 한다.
- 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,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9조(군의회 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의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위원회의 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「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 한조례」에 따라 구성된 거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

의안	2007 ~ 27
번호	2007 ~ 27

제출연월일	2007. 9. 18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정비사업의 활성화, 상인조직 육성 등을 통해 영세상인을 보호하고,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 재래시장, 상인, 점포, 임시시장, 상점가, 시설물, 편의시설, 상인회, 시장관리자 등
- 나. 시장의 개설, 관리,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제10조, 안 제15조부터 제18조)
- 다.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, 범위, 지정,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부터 제14조)
- 라.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,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부터 제22조)
- 마.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부터 제30조)
- 바.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31조부터 33조)
- 사.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절차 및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4조부터 39조)
- 아. 과태료 부과,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40조부터 제44조)
- 자. 유효기관 및 경과규정 등(안 부칙)
 -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16년 말까지로 함
 - ○「거창군 재래시장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
 -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정부와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 및 협약에 따라 위탁한 재래시장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협약 체결한 것으로 보며,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설물 관리자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0조,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, 제25조부터 제29조, 제65조, 제67조, 제74조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제12조, 제14조
-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35조
-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제3호·제4호·제6호, 제8조, 제14조
-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제5조
- 「건축법」제2조,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
- 「행정절차법」제27조,「지방자치법」제104조제3항, 「지방세법」제28조,「비송사건절차법」제248조
- 「주차장법」제8조제2항, 제13조제3항, 「소방기본법」제15조, 「도로법」제40조,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7조
- 「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6조 「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」제22조, 「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조례」제6조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
- 나. 예산조치 : 추가소요예산 없음

다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- (2) 입법예고(2007. 7. 26. ~ 8. 15.)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개설과 관리, 인정시장, 시장 활성화구역, 임시시장, 농어민직영매장, 상인회, 시장관리자, 시설물의 운영·관리 및 과태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재래시장"이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(이하"등록시장"이라 한다)과 이와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어 군수가 시장으로 인정하는 곳(이하"인정시장"이라 한다)을 말한다.
- 2."상인"이란 재래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, 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 다만,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(이하 "장옥형 시장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.
- 3."점포"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·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. 다만,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.
- 4."임시시장"이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.
- 5."상점가"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·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.

- 6."시설물"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거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·시장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.
- 7. "편의시설"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, 비 가리개, 도로, 화장실, 전기·소방·가스·상하수도 및 냉·난방시설, 고객지원센터,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.
- 8."상인회"란 법 제65조 및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12조에 따라 시장, 시장 활성화구역 또는 상점 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.
- 9."시장관리자"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구역) ①도매업·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,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.
 - ②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,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.
- 제4조(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)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·보수하고 관리하 여야 한다.
 -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, 화장실,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 -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,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「재래시장 및 상

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」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,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 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·가스·소방 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,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.
- 제5조(편의시설의 설치기준) ①제2조제7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.
 - 1. 주차장 :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「건축법」, 「주차장법」 및 「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.
 - 2. 비 가리개 :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, 「건축·소방·도로법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3. 화장실: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 방화장실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4. 시장안의 도로 :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, 적치물 경계선 위와 도로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다.
 - 5. 진입도로 :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 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
 -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·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제2장 인정시장의 인정 및 관리

제6조(인정시장의 기준 등) ①인정시장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"영"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·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해당하여야 한다.

- 1.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(도로를 제외한다)이 점유하는 토지면 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
- 2.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
-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 에는 각각 따로 본다.
- 제7조(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) ①인정시장구역은 도매업·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.
 -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, 1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.
 - ③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, 공중화장실, 고객센터,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.
- 제8조(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)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
 - 1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
 - 2.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,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
 - 3.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 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.
- 제9조(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)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
 - 2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
 - 3.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

- 4.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
- 5.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학원은 제외한다), 공장, 공공용시설 등 도 매업·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
- 제10조(인정시장의 인정취소)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3장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

- 제11조(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) 시장 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 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하는 지역을 말한다.
- 제12조(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) 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,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
- 제13조(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절차) 군수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,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.
- 제14조(시장 활성화구역의 관리) 군수는 시장 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다.

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·등록

- 제15조(임시시장의 개설)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 하거나,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.
- 제16조(임시시장의 등록)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 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(군수는 제외한다)는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- 제17조(임시시장의 관리)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 - 1. 시설의 유지 및 관리
 - 2. 화재의 예방, 청소 및 방범 활동
 - 3.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·불만의 처리
 - 4. 상거래 질서의 확립
- 제18조(임시시장의 등록취소)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
 - 2.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
 - 3.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
 - 4.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

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·지원

- 제19조(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) 군수는 우리 군의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 및 수산물(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)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(이하 "공설시장"이라 한다)의 빈 점포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(이하 "농어민직영매장"이라 한다)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20조(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)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,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제21조(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)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설치 신청을 할수 있는 농어민은 우리 군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.

제22조(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)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변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사용료의 50%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

- 제23조(상인회의 설립) ①시장, 시장활성화구역, 상점가의 상인회(이하 "상인회"라한다)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.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,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의 특성에 따라 상인회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1점포당 1인 이상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다.
- 제24조(상인회 정관 등)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 (이하 "정관"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,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.
 -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상인회 등록 등) ①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 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정관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, 대표자, 소재지,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군수는 등록된 상인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26조(상인회의 등록취소) ①군수는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

- 2.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
- 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 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
-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내용을 군 공보에 공고하고,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제27조(예산의 지원)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 금을 신청 할 수 있다.
 - ②군수는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65조제7항,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「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」에 따라 신청, 정산 및 집행잔액, 부가가치세환급금,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.
- 제28조(서류비치 등)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- 1. 회원명부
 - 2. 정관
 - 3. 임원명부
 - 4. 관할 구역 배치도
 - 5. 총회 회의록
 - 6.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
 -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사업관련 회계서 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운영상황의 공개)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30조(보고 및 자료제출)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

- 2.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
-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법 제11조부터 제17조,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
- 2.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

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·운영

- 제31조(시장관리자의 지정)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,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있다.
 -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32조(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) ①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, 예산의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33조(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)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- 1.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
 - 2.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,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.
 - 3.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

제34조(시설물의 소유권) ①법 제11조부터 제17조,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,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,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
- 2.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. 다만,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아니할 수 있다.
-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인조직"이라 한다)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
- 2.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 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
-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④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·군·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,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잔여가치가 있는 매각물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.
- 제35조(위탁관리) ①군수는 시장,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제95조제3항 및 「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」, 「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」, 「거창군 공중화장실관리조례」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(이하"수탁자"라 하다)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.
 -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,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- 제36조(수탁자의 의무)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·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,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 -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 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37조(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)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공영주 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 비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38조(지도·감독)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 -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, 시설물의 관리자(수탁자를 포함한다)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제39조(인·허가 등의 일괄처리)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9장 과태료 부과·징수

- 제40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·징수한다.
- 제41조(과태료 부과기준)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다.

- 제42조(과태료 처분통지 등)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.
 -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 만약,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- 제43조(강제징수)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.
- 제44조(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)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.
- 제45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- 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거창군 재래시장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- 제4조(경과조치)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「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의 규정에 따라 정부와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.

- ②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에 따라 위탁한 재래시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체결 된 것으로 본다.
- ③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자는 이 조례 공포일부터 3월이내에 제31조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,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 및 번영회(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 등은 제외)등은 이조례 공포일부터 3월이내에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	납투	부통지서				영수필통	지서(1	1)			영수필	통지서	(2)				영	수 증	÷	
제 호		년도	일반회계	제	호		년도	일반회계	제	호	 	년도	일반호	회계	제	호		년도	,	일반회계
세입과목			입	세인	l과목	(관)임시 (항)잡수 (목)과티	-입	일	세인	l과목	(관)임 (항)집 (목)괴		수입		세입	십과목	(관)일 (항)집 (목)고		수입	
위반사항	육(재래시장 (성을 위한 제 조 <i>)</i>	특별법」	위빈	나사항	육성	을 위힌	및 상점가 한 특별법」 제 항	위빈	산사항	육(성을 위	장 및 상점 한 특별법 제 항		위턴	반사항	1	재래시? 성을 위 제 조	한 틀	_
납 단 부	체 명			납	단 처	명			납	단 🧵	해 명	 			납 부	단 🧵	 체 명			
의성	명			의	성 	명			의	성 	명				의	성	명			
무 자 주	소 			무 자	주	소			무 자	주	소				무 자	주	소			
과태료 금	글액			과E	내료 금역	백			과티	네료 금	액				과E	배료 금	액			
납 입 기	한	년 월	실 일	납	입기형	<u></u>	년	월 일	납	입 기	한	년	월 일		납	입 기	한	년	월	일
납 입 장	소 연 협				위의 통지합니	금액을 니다.	영수호	l였음을		위으 통지합		을 영수	하였음을			위.	의 금액	ේ을 영 <i>≐</i>	수합니	다.
점가 조의	육성을	위한 특별 따라 부과	l장 및 상 법」 제74 되었으니			○○은행		지점			이이은	행 ()(·)지점					·		
			수입일 부 인					수입일 부 인						입일 인						수입일 부 인
۱۱ · <u>۱</u> ۱۱ · ۱		징수관(인)			시 · 도 시 · 군	·구 징=	수관(인)	ı	시 · 도 시 · 군	: : : · 구 =	당고 귀히	ōŀ			0	○은행		점	

A80×60mm 신문용지 54kg/㎡ A80×60mm 신문용지 54kg/㎡ A80 ×60mm 신문용지 54kg/㎡ A80×60mm 신문용지 54kg/㎡ (별지 제2호서식)

A80 ×160mm

신문용지 54kg/㎡

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(1) 영수필통지서(2) 영 수 증 제 호 년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일반회계 일반회계 (관)임시세외수입 (관)임시세외수입 (관)임시세외수입 (관)임시세외수입 세입과목 (항)잡수입 세입과목 (항)잡수입 세입과목 (항)잡수입 세입과목 (항)잡수입 (목)과태료 (목)과태료 (목)과태료 (목)과태료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| 위반사항 육성을 위한 특별법 | 위반사항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사항 육성을 위한 특별법 .. 위반사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납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단 체 명 부 부 부 부 성 성 성 성 의 의 의 의 무 무 무 무 자 사 사 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시내각은행 본점, 지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예금취급소, 농협, 수협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. 납 입 장 소 전국우체국 통지합니다. 통지합니다. (한은, 산은제외)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 ○○은행 ○○지점 ○○은행 ○○지점 제징수하겠습니다. 수입일 수입일 수입일 수입일 부 인 부 인 부 인 부 인 ------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○○은행 ○○지점 시·군·구 징수관(인) 시 · 군 · 구 징수관(인) 시 · 군 · 구 금고 귀하

A80 ×160mm

신문용지 54kg/㎡

A80 ×160mm

신문용지 54kg/㎡

A80 ×160mm

신문용지 54kg/㎡

(별지 제3호서식)

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

신 청 인	성	명				주민등록번호	
신 성 인	주	소				·	
단 체 명							
주 소							
과 태 료		부	과관청			납부통지서 번 호	
처 분 내 역		통	지일자 			과태료금액	
		과티	H료처분사유				
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							
	Й C) 의를 기	레기하오니		_		따라 위의 과태료 과태료재판을 받
			년	월	일		
			위 신청인		(인)		
거 창 군 수 7	리하						
구 비 서 류				<u></u>	t	e 0	

(별지 제4호서식)

-									
			거	창	군				
M 호					발신일자 :				
수 신:					발 신 : 거 창 군 수				
 제 목:고	제 목 :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								
1.	1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74조와 관련입니다.								
2.	2.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								
료처분을 현	한 바 다음	음과 같이	이 이의제	기가 9	있어 통보하오니「비송사건절차법」				
에 따라 과	태료 재된	판을 하여	계 주시기	바랍니	니다.				
과태료 처분에 대한	과태료 처분에 성 명 대한 (한자)		주민등록번호				
이의 제기자	주 소								
단 체 명		·			주 소				
과 태 료	과태료 통지(i			과 태 료 금 액				
처분내역	부과;	관청			이의제기				

첨 부 : 1.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 1부

2.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. 끝

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

제출	출연원	일일	2007. 9. 18.
제	출	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,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함으로써, 우리군민들이 나라 사랑정신을 존중하게 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(안 제5조, 제6조)
 - 중요 행사시 "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"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 - 중요 행사시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
 -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
 -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, 보훈관련 기념일·추모일 행사시 위문
 -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
- 다. 보훈단체 지원(안 제7조)
 -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
 - 호국·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, 전적지 등 순례사업
 -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- 라. 국가보훈대상자 예우(안 제8조)
 - 거창군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관람료, 주차료 등 감면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, 제5조, 제18조, 제19조, 제22조, 제24조 등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

- 나. 예산조치 : 2007년 당초예산 기확보(105,600,000원)
- 다. 그 밖에
 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 - (2) 입법예고(2007. 6. 1. ~ 6. 20.) 결과 : 의견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희생·공헌자"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 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 -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 훈관련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 - 3. "국가보훈관련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 - 4. "보훈단체" 란 우리 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국가보훈관련법령 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 상자와 국가보훈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 를 받은 단체(이하 "보훈단체"라 한다)로 한다.
- 제4조(군민의 책무) 모든 군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 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우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) 중요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, 행사에 초청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.
- 제6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군수는 희생·공헌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공 훈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- 1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
 - 2.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
 - 3.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 - 4. 보훈관련 기념일·추모일 등 행사개최 시 보훈단체 위문
 - 5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
 - 6.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및 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·공헌자의 업적선양
- 제7조(보훈단체 지원) ①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보훈단체의 운영 및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
 - 2. 호국·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, 전적지 등 순례사업
 - 3. 보훈단체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- 제8조(국가보훈대상자 예우)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거창군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, 관람료, 주차료를 감면한다. 다만, 당해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·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.
- 제9조(민간의 참여조성) 군수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)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거창군 6.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07 ~ 29

제를	출연원	일일	2007. 9. 18.
제	출	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6.25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하였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월남전쟁참전유공자 등에게도 지원하도록 하여, 참전유공자의 형평성 유지 및 명예를 높여줌으로써,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로 간결하게 함
- 나. 용어의 정의를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맞춤(안 제2조)
- 다. "6.25참전 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"로 하여 지원범위 확대함 (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)
 - 6.25참전유공자로만 한정되어있는 지원대상을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와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·25전쟁에 참전한 자, 무공수훈자를 추가함으로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
- 라. 지워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자로 함(안 제3조)
- 마. 제명 변경으로 인한 별지서식의 일부문구 수정함(안 별지 제1호·제2호서식)

3. 개정근거

가. 관련법규

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4조

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조

「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

나. 예산조치 : 추가 소요금액 연간 20,000천원 정도

예산 확보 : 2008년도 본예산 반영 계획

다. 그 밖에

- 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(2) 입법예고(2007. 6. 1.~ 6. 20.) 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 6.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6.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거창군 6.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"를 "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"6.25전쟁"을 "6.25전쟁 또는 월남전쟁"으로 하며, "6.25 참전 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"참전유공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. 다만, 6.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를 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.

- 1. 6.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·퇴역·면역된 군인
- 2. 6.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- 3. 6.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 한다)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
- 4.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.25전쟁에 참전한 사실 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
- 5. 「병역법」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 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·퇴역·면 역된 군인

제3조 본문 중 "주소를 둔 자"를 "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"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및 제1호 중 "6.25참전 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"로 하고,

같은 조제2호 중 "제6호·제7호·제8호"를 "제6호·제8호"로 한다.

제4조 중 "①거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6.25참전 유공자"를 "군수는 참전유공자"로 하고, 제1호부터 제2호 중 "6.25참전 유공자"를 "참전유공자"로 하며, 제4호 중 "기타 6.25참전 유공자"를 "그 밖에 참전유공자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6.25참전 명예수당"을 "참전명예수당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·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「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제9조제1항제4호 중"「거창군 6.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」"를"「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"로 한다.

<u>신・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거창군 6.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률"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거 6.25전쟁에 참전한유공자(이하 <u>"6.25참전 유공자</u> "라 한다)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<u>관한 법률」</u> <u>6.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</u> <u>"참전유공자</u> "
제2조(정의) 6.25참전 유공자의 정의는다음 각호와 같다. 1. 6.25전쟁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2. 6.25전쟁 기간 중 전쟁에 참전하고퇴직한 경찰공무원 3. 6·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)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〈신 설〉	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를 말한다. 다만, 6.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대를하였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. 1. 6.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·퇴역·면역된 군인 2. 6.25전쟁에

<u>신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자) 지원대상자는 6.25참 전 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거창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한다. 단, 다음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. 1. 6.25참전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 청장이 법률 제3조제2항,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 2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상금을 받는 자	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1. 참전유공자
제4조(지원사업) ①거창군수(이하"군수" 라 한다)는 6.25참전 유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. 1. 6,25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지급 2. 6,25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. (생략) 4. 기타 6.25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	 1. <u>참전유공자</u>
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 ①6.25참전 명 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. 수당은 매분기 첫월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.	

[별지 제1호서식]

참건	전등록	번호										
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												
		7일										
신 청 인	성	명			주민	l등록번	<u>ই</u>	_				
	주	소	우편번호 : □□□ 경상남도 거창군	- [Э Н	··면 (전	리 화번호		번지)			
예금 계좌	금융기]관명		예] 금	종 류						
	계좌	번호		예	금주	성명						
「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
				ו	년	월	일					
			신청인			(۶	서명 또는 인))				
거창군수 귀하												
구비서류 : 1.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												
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						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참전	등록번	호				
	처리기간					
	7일					
	성	명		주민등록번호		_
참 전 유공자	주	소	경상남도 거창군	읍·면	리	번지
	사망	일자				
신청인	성	명		주민등록번호		_
	주	소		(전화번호)	
	참전수			지급기관 (예금계좌)		

「거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거창군수 귀하

※ 구비서류

- 1. 사망자의 호적등본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2.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

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 2007 ~ 30

제출연월일	2007. 9. 18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장묘문화의 변천으로 다양해진 장묘방법별 용어를 보다 현실적이고 순화된 우리말로 표기하고, 공설일반묘지 중 재정비사업을 한 곳은 공설공원묘지로 분류하여 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「거창군 공설묘지조례」로 간결하게 함

나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과 장묘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용어를 순화함

- 납골 ⇒ 봉안(안 제2조·제6조·제13조·제15조·제16조의1)
- 묘지에 매장 ⇒ 장묘시설에 안치(안 제5조제2항제2호)
- 납골당 ⇒ 봉안시설(제16조의1)
- 다. 법제처의 "법령입안 심사기준" 개정에 따른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함
 - 각호 ⇒ 각 호(안 제2조·제6조)
 - 제16조의1 ⇒ 제16조의2(안 제16조의1)
 - 각호의 1 ⇒ 각 호의 어느 하나
 (안 제5조·제8조·제10조·제12조·제14조·제22조)
- 라. 일반묘지를 정비하여 공원묘지로 변경된 곳의 명칭을 수정함(안 별표 1)
 - 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 ⇒ 고제공설공원묘지
- 마. 납골묘 및 납골당의 명칭을 수정함(안 별표 2)
 - 납골묘 ⇒ 봉안묘, 납골당 ⇒ 봉안당

3. 참고사항

가 관련법규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그 밖에

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입법예고(2007. 5. 21. ~ 6. 9.)결과 : 의견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"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"를 "거창군 공설묘지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"법"이라 한다)제12조"를 "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3조"로 하고 "거창군공설묘지(이하"공설묘지"라 한다)"를 "거창군공설묘지"로 한다.

제2조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제1호 중 "납골시설"을 "봉안시설"로 하고, 같은 조제4호 중 "납골묘"를 "봉안묘"로, "납골당"을 "봉안당"으로 "납골탑"을 "봉안탑"으로 한다.

제3조 중 "공설묘지"를 "거창군공설묘지(이하 "공설묘지"라 한다)"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중 "묘지에 매장"을 "장묘시설에 안치"로 한다.

제6조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고, 제2호 중 "납골묘·납골당"을 "봉안묘· 봉안당"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"법 제17조 제4항"을 "법 제19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법 제23조"를 "법 제27조"로 한다.

제12조제1호 중 "법"을 "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"

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"법 제23조"를 "법 제20조"로, "납골시설"을 "봉안시설" 로 한다.

제15조의 조제목 중 "납골시설"을 봉안시설"로 한다.

제16조의1 조제목 중 "납골유골"을 "봉안유골"로 하고, 제1항 중 "납골당"을 "봉안시설"로 하고, "제16조의1"을 "제16조의2"로 한다.

제5조제2항, 제8조, 제10조, 제12조, 제14조, 제22조 중 "각호의 1"을 "각 호의 어느 하나"로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<u>신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	거창군 공설묘지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거창군공설묘지</u> (이하 "공설묘지"라 한다)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「장사 등에</u> 관한 법률」제13조 <u>거창군공설묘지</u>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. 1."장묘시설"이라 함은 공설공원묘지 내의 매장묘지, <u>납골시설</u> 등 군에 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. 2. ~ 3. (생략) 4. "납골시설"이라 함은 <u>납골묘(분묘의형태), 납골당(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2호의</u> 규정에 의한 건축물), <u>납골탑(</u> 탑의 현태로 된 공작물)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
제3조(공설묘지의 구분) <u>공설묘지</u> 는 공설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로 구분 한다.	제3조(공설묘지의 구분) <u>거창군공설</u> 묘지(이하 "공설묘지"라 한다)
제5조(사용허가등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1. (생 략) 2.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<u>묘지에 매장</u> 하고자 하는 경우	제5 조(사용허가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 <u>장묘시설에 안치</u>

<u>신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용면적) 1기당 공설묘지 사용 면적은 다음 <u>각호</u> 와 같다 1. (생 략) 2. <u>납골묘·납골당</u> : 안치단 1개	제6조(사용면적) <u>각 호</u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봉안묘·봉안당</u>
제9조(설치기간) (생 략) ① ~ ④ (생 략)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분 묘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	법 제19조제4항
제10조(사용권의 소멸등) ① (생 략)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<u>법 제23조</u>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.	
제12조(사용권의 취소) (생 략) 1. <u>법</u>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. ~ 3. (생 략)	제12조(사용권의 취소) (현행과 같음) 1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2. ~ 3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수거 및 개장명령) ① (생 략)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매장 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제13조(수거 및 개장명령) ① (현행과 같음) ②

<u>신·구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분묘의 설치 및 <u>납골시설</u> 안치등) ①~③ (생 략)	제15조(분묘의 설치 및 <u>봉안시설</u> 안치등) ①~③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1(납골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) ①납골당의 유골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납골당 안치이후소재가 불확실하거나 관리자가 분명하지 않는 화장유골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. ② (생략)	제16조의2(봉안유골 안치기간 및 처리) ①봉안시설

【별표 1】

장묘시설의 명칭등

1. 공설공원묘지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계	<u>6개소</u>	<u>77,156</u>
북상공설공원묘지	월성리 산 150	13,075
가조공설공원묘지	일부리 산 5	10,678
거창공설공원묘지	가지리 산 170	14,619
남상공설공원묘지	무촌리 산 253	12,817
가북공설공원묘지	용암리 산 125	10,512
고제공설공원묘지	봉산리 1309	15,455

2. 공설일반묘지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합계	128필지	551,034
소 계	5필지	16,034
거창정장공설일반묘지	정장리 산 89	6,149
거창장팔공설일반묘지	장팔리 산19	5,752
거창학리공설일반묘지	학리 산 70	2,182
거창양평공설일반묘지	양평리 산 156	959
거창양평공설일반묘지	양평리 산 169	992
소 계	14필지	42,850
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	성기리 산 37	6,545
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	연교리 산 3	873
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	연교리 산 127	4,638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주상연교공설일반묘지	연교리 산 251	4,403
주상내오공설일반묘지	내오리 산 87	2,182
주상내오공설일반묘지	내오리 산 118	2,281
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	완대리 산 46	2,281
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	완대리 산 112	3,769
주상완대공설일반묘지	완대리 산 163	2,083
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	성기리 산 84	1,488
주상성기공설일반묘지	성기리 산 136	225
주상거기공설일반묘지	거기리 산 7	4,760
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	남산리 산 108	5,537
주상남산공설일반묘지	남산리 산 141	1,785
소 계	16필지	57,689
웅양죽림공설일반묘지	죽림리 산 108	11,379
웅양동호공설일반묘지	동호리 산 6	2,813
웅양노현공설일반묘지	노현리 산 16	4,007
웅양산포공설일반묘지	산포리 산 265	3,814
웅양산포공설일반묘지	산포리 산 187	2,678
웅양산포공설일반묘지	산포리 산 3	2,400
웅양군암공설일반묘지	군암리 산 194	992
웅양군암공설일반묘지	군암리 산 122	2,539
웅양군암공설일반묘지	군암리 산 19	5,795
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	신촌리 산 43	1,752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	신촌리 산 75	4,469
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	신촌리 산 123	2,704
웅양신촌공설일반묘지	신촌리 산 141	4,046
웅양한기공설일반묘지	한기리 산 15	1,868
웅양한기공설일반묘지	한기리 산 39	3,769
웅양한기공설일반묘지	한기리 산 43	2,664
소 계	13필지	55,834
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	농산리 산88	3,174
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	농산리 산 4	15,570
고제농산공설일반묘지	농산리 산 125	4,562
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	개명리 산 71	4,364
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	개명리 산 211	1,686
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	개명리 산 100	3,074
고제개명공설일반묘지	개명리 산 53	1,884
고제봉계공설일반묘지	봉계리 산 158	3,273
고제봉계공설일반묘지	봉계리 산 202	3,074
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	봉산리 산 215	4,661
고제봉산공설일반묘지	봉산리 산 21	2,479
고제궁항공설일반묘지	궁항리 산 198	5,950
고제궁항공설일반묘지	궁항리 산 51	2,083
소 계	4필지	32,379
북상갈계공설일반묘지	갈계리 산 39	9,540
북상갈계공설일반묘지	갈계리 산 87	9,818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북상창선공설일반묘지	창선리 산 55	3,395
북상소정공설일반묘지	소정리 산 134	9,626
소 계	8필지	41,920
위천남산공설일반묘지	남산리 산 41	4,959
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	상천리 산 54	2,308
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	상천리 산 43	9,421
위천상천공설일반묘지	상천리 산 33	2,224
위천강천공설일반묘지	강천리 산 60	8,529
위천강천공설일반묘지	강천리 산 33	4,959
위천황산공설일반묘지	황산리 산 37	2,380
위천당산공설일반묘지	당산리 산 17	7,140
소계	2필지	5,242
마리고학공설일반묘지	고학리 산 32	3,695
마리말흘공설일반묘지	말흘리 산 84	1,547
소계	15필지	85,497
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	무촌리 산 253	6,760
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	무촌리 산 10-1	3,174
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	무촌리 산 10-4	1,785
남상무촌공설일반묘지	무촌리 산 69	8,132
남상대산공설일반묘지	대산리 산 141	9,521
남상대산공설일반묘지	대산리 산 37	11,107
남상둔동공설일반묘지	둔동리 산 168	3,967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남상월평공설일반묘지	월평리 산 201	6,744
남상송변공설일반묘지	송변리 산 54	9,917
남상전척공설일반묘지	전척리 산 124	3,174
남상오계공설일반묘지	오계리 산 159	9,223
남상오계공설일반묘지	오계리 산 224-1	2,869
남상임불공설일반묘지	임불리 산 119	3,174
남상춘전공설일반묘지	춘전리 산 83	3,074
남상진목공설일반묘지	진목리 산 27	2,876
소 계	11필지	56,765
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	무릉리 산 266	5,296
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	무릉리 산 36	9,322
남하무릉공설일반묘지	무릉리 산 293	9,917
남하대야공설일반묘지	대야리 산 140	3,835
남하대야공설일반묘지	대야리 산 83	2,290
남하둔마공설일반묘지	둔마리 산 174	3,038
남하둔마공설일반묘지	둔마리 산 20	5,355
남하양항공설일반묘지	양항리 214	3,269
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	지산리 산 153	4,311
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	지산리 산 201	6,750
남하지산공설일반묘지	지산리 산 12	3,382
소 계	8필지	42,398
신원중유공설일반묘지	중유리 산 249	4,615
신원구사공설일반묘지	구사리 산 75	9,276
신원덕산공설일반묘지	덕산리 산 190	1,587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신원청수공설일반묘지	청수리 산 117	12,893
신원중유공설일반묘지	중유리 산 65	2,579
신원대현공설일반묘지	대현리 산 149	3,084
신원대현공설일반묘지	대현리 산 38	2,704
신원과정공설일반묘지	과정리 산 38	5,660
소 계	16필지	72,508
가조석강공설일반묘지	석강리 산 134	7,438
가조석강공설일반묘지	석강리 산 137	4,469
가조기리공설일반묘지	기리 산 171	1,342
가조기리공설일반묘지	기리 산 234	2,886
가조동례공설일반묘지	동례리 산 127	4,073
가조동례공설일반묘지	동례리 산 207-1	6,545
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	사병리 산 13	6,979
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	사병리 산 24	3,590
가조사병공설일반묘지	사병리 산 27	4,618
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	수월리 산 90	2,955
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	수월리 산 122	2,235
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	수월리 산 146	2,625
가조수월공설일반묘지	수월리 산 147	10,476
가조도리공설일반묘지	도리 산 184	1,540
가조도리공설일반묘지	도리 산 207	1,911
가조장기공설일반묘지	장기리 산 11	8,826

명 칭	위 치	면적(m²)
소 계	16필지	41,918
가북용암공설일반묘지	용암리 산 125	10,512
가북우혜공설일반묘지	우혜리 산 115	3,821
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	박암리 산 180	6,089
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	박암리 산 198	2,393
가북박암공설일반묘지	박암리 산 120	793
가북몽석공설일반묘지	몽석리 산 31	2,436
가북몽석공설일반묘지	몽석리 산 72	4,463
가북용암공설일반묘지	용암리 산 29	3,987
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	중촌리 산 144	1,203
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	중촌리 산 200	1,997
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	중촌리 산 22	1,488
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	중촌리 산 59	2,083
가북중촌공설일반묘지	중촌리 산 103	2,245
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	해평리 산 169	1,957
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	해평리 산 239	1,769
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	해평리 산 287	1,369
가북해평공설일반묘지	해평리 산 227	3,825

【별표 2】

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

구 분	사용료(15년간)		관리비(3년간)		비고
구 분	기 준	금액(원)	기 준	금액(원)	
공설공원 묘지(매장)	1 m² 당	18,000	1구당	36,000	
<u>봉안묘</u>	1개안치단당	18,000	1개안치단당	10,000	
봉안당	1개안치단당	60,000	1개안치단당	20,000	
공설일반 묘지(매장) 1 m²당		2,000			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	0007 01	제출일자	2007. 9. 18.
번호	2007 ~ 31	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- 거창박물관에 입장할 때 관람료를 받고 있으나 연간수입이 소액이어서 관람권 인쇄비 등 징수비용을 제하고 나면 세입효과가 매우 낮으므로, 박물관의 사회 교육적 측면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화 하여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·문화공간으로 개방하고.
-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"거창박물관조례"로 변경함.
- 나. 목적을 개정된 조례에 맞게 새로이 규정함(안 제1조).
- 다.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. (용어의 정의, 관람절차, 관람료 징수방법, 관람료 면제조항 등)
- 라. 박물관의 업무를 현실에 맞게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명예관장 제도를 없애고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함(안 제13조).
 -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·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.
 - 위원은 박물관담당 부서장과 박물관운영에 식견 있는 학계, 문화· 예술계, 지역인사 중 군수가 위촉, 임기는 2년, 연임 가능함
- 바. 박물관자료의 취득, 구입, 기증, 기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7조, 제8조, 제9조)
- 사. 관람자의 행위제한, 입장제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(안 제10,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7조, 제12조, 제25조

「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」제6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그 밖에

○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 없음

○ 입법예고(2007. 7. 31. ~ 8. 25.)결과 : 의견 없음.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박물관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거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치) 거창박물관(이하 "박물관"이라 한다)은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-5번지에 둔다.
- 제3조(개관 및 휴관)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.
 - 1. 1월1일, 설날, 추석날
 - 2. 매주 월요일
 -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
 - ②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, 군청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.
- 제4조(관람시간)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- 1. 3월 1일부터 10월 31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 - 2.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 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
- 제5조(업무)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2조제3호에서 규정

하는 "박물관자료"의 수집, 관리, 보존, 조사, 전시 및 연구

- 2. 향토사 및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 · 조사 · 연구
- 3. 박물관자료와 관련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4.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6조(공무원) 박물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- 제7조(박물관자료의 취득) 박물관자료는 수집, 구입, 기증, 기탁, 관리전환 에 의하여 취득한다.
- 제8조(박물관자료의 구입)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.
- 제9조(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) ①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시,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.
 - ②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.
- 제10조(행위의 제한) ①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1.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
 - 2. 흡연,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
 - 3.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
 - 4.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
 - 5.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
 - ②박물관 근무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 거절 및 퇴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입장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 장을 제한할 수 있다.
 - 1. 술에 취한 자
 - 2. 정신이상자

- 3.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
- 4.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
- 5.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
- 6.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제12조(변상)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자료, 관람시설, 물품 등을 손상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운영위원회) 박물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박물관을 관장하는 부서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 - ③위원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, 문화·예술계,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 -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-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 - ⑦위원회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되며,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다.
 -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「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- 1.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2.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
- 3.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
- 4.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

의안 번호 2007 ~ 32

제출연월일	2007. 9. 18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군의 체육진흥을 도 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, 체육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문체육의 육성(안 제3조)
 - 우수선수의 과학적,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.
- 나. 생활체육의 육성(안 제4조)
 -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- 다. 직장체육의 육성(안 제5조)
 -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 동호회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.
- 라. 학교체육의 진흥(안 제6조)
 - 학교체육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마. 포상(안 제7조)
 -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
- 체육행정, 재정지원, 체육홍보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바. 경비의 지원(안 제8조)
 - 범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,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, 국내·국제대회의 유치 및 진행, 홍보에 필요한 경비,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체육의 지도 보급, 체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,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지원 등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 및 제8조
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」제4조

「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」제2조

「경상남도 생활체육진흥 조례」

「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667,600천원(2007년 당초예산)

307-02(민간경상보조) 44,000천원

307-04(민간행사보조위탁)623,600천원

다. 그 밖에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해당없음

(2) 입법예고(2007. 6. 22. ~ 7. 11.)결과 : 의견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 체육진흥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우리군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체육"이란 운동경기,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전문체육"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.
- 3. "생활체육"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.
- 4. "체육회"란 군내 경기단체(이하"경기단체"라 한다)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, 체육경기 개최와 선수양성 및 경기력 향상 등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는 군내 체육단체(이하"체육단체"라 한다)를 말한다.
- 5. "생활체육단체"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소속 종목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전문체육의 육성) ①우수선수의 과학적,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체육회 및 경기단체를 육성한다.
 - ②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
 - 2.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
 - 3.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제4조(생활체육의 육성) ①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.
 - ②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
 - 2.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
 - 3.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
- 제5조(직장체육의 진흥) ①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한다.
 - ②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.
- **제6조(학교체육의 진흥)** 학교체육 우수선수 및 운동경기부에 장학금 또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포상) ①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 - ②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.
 - ③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생활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생활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2. 체육행정, 재정지원,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
 - 3.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
 - ④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자 및 운동경기부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.
- 제8조(경비의 지원) ①군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「거창군 보조금관리조례」의 규정에 따라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범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
- 2.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
- 3. 국내·국제 대회의 유치 및 진행, 홍보에 필요한 경비
- 4.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체육의 지도·보급
- 5. 체육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
- 6.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
- 7. 학교체육 우수 운동경기부의 육성
- 8.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부 칙

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~ 3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		2007. 9. 18.
제	출	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,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은 물론 FTA 등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- 나. 친환경농업 관련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다.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)
 - 위원회는 심의·의결기구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
 -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사업, 기술보급, 과제발굴,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·의결
- 라. 친환경농업육성,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친환경농산물의 생산·저장·가공·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 마. 친환경농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- 부정행위를 한 농업인, 단체 등에 대한 지원중단 및 「농산물품질 관리법」에 근거한 고발 등
- 바.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 -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을 구성 운영하며, 사업단은 생산자협의체, 기능별협의체, 각 시설·장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함
 - 사업단장은 사업단에서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함
 - 사업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음.

- 사업단의 기능에 관한 규정
-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 수립·변경, 광역화를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,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 제3조, 제17조, 제19조

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제9조, 제39조

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제35조, 제36조

나. 예산조치 : 2007년 32억 7천만원 당초예산 확보

매년 25%증액 총 268.4억원 투입계획

다. 그 밖에

(1)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(2)입법예고(2007. 6. 21. ~ 7. 11.)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거창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"친환경농업"이란 합성농약, 화학비료 및 항생·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·축·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·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.
 - 2. "친환경농산물"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.
 - 3. "친환경인증 농산물"이란 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을 말한다.
 - 4. "친환경농업기술"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.
 - 5. "광역친환경농업단지"란 1,000Ha 이상의 농경지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, 가공, 판매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농업 인이 조직한 영농단지를 말한다.
- 제3조(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) ①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 -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.
 - ③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, 농업관련 유관 기관·단체의 대표자,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의 대표자,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

- 경험이 풍부한 자,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- ④산림환경과장, 농정과장, 농업지원과장, 원예특작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-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-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주사가 한다.
- 제4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 - 2.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
 - 4.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
 - 5.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.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회의)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제8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9조(보조금의 지원) ①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거나, 생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.
 - 1. 국가·도·군이 권장하는 사업
 - 2. 생산·저장·가공·유통과 관련된 사업
 - 3.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된 사업
 - 4.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
 - 5.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업
 -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제1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, 작목반, 단지 등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최근 3년간 보조·지원사업 수행내역
 - 2. 현재의 영농현황
 - 3. 각서 및 참여동의서(주민회의록 사본)
 - 4. 부지사용승낙서
- 제10조(친환경농산물의 관리) ①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은 믿음과 신뢰로 안전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, 부정한 방법 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출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규제 할 수 있다.
 - 1. 부정한 행위를 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3년간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한 지원을 중단한다.
 - 2.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영농법인, 농업인이 속한 작목반에 대해서는 1년간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한 지원을 중단한다.
 - ③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출하한 영 농법인과 농업인은 법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됨을 홍보하 여야 한다.
 - ④친환경농산물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) ①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한다.
 - ②사업단은 친환경농산물생산협의체, 기능별협의체, 각 시설·장비운영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생산자협의체 운영위원 전원과 기능별협의체 대표, 각 시설·장비운영위원회 대표와 사업단장과 부사업단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사업단을 구성한다.
 - ③사업단장은 사업단에서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.
 - ④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, 사업단의 사무를 통할한다.
 - ⑤사업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사업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- ⑥사업단의 회의는 사업단장이 소집하며,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⑦사업단장은 단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⑧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.
 - 1.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사후평가
 - 2. 친환경농업 관련 시설,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·관리
 - 3. 사업단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 자재의 공급
 - 4. 친환경농업의 광역화를 위한 생산기술 보급 및 지도
 - 5. 사업단의 마케팅에 관한 사항
 - 6.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 등 중요사항의 조정
 - 7. 그 밖에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·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 2007 ~ 34

제출연월일			2007. 9. 21.
제	출	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우리 군의 노인·여성·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창군 삶의 쉼터 "노인·여성·장애인복지관"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명칭 및 위치(안 제2조)

○ 명칭 : 거창군 삶의 쉼터

○ 위치 :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-1번지

나. 주요시설(안 제4조)

○ 노인복지회관, 여성복지회관, 장애인복지관별 주요시설 규정 다. 주요사업내용(안 제5조)

○ 노인복지사업 : 노인문제 상담, 노인교육, 노인복지증진사업 등

○ 여성복지사업 : 여성문제 상담, 취미·소양교육, 여성복지증진사업 등

○ 장애인복지사업 : 장애인상담, 재활치료,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라. 운영(안 제6조)

○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시 위탁운영 가능 ⇒ 위탁운영계약시 기간 : 3년 이내, 재위탁 가능

○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가능

마. 기구 및 인원(안 제7조)

○ 「노인복지법」및「장애인복지법」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

○ 위·수탁의 경우 관장 및 사무국장 임명은 사전에 군수 승인

- 바. 시설의 사용료(안 제8조)
 -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
- 사. 수탁자의 의무(안 제9조)
 - 수탁 시설의 선량한 관리 등 의무 명시
- 아. 위탁의 정지 및 취소(안 제10조)
 - 수탁자 의무 위반, 협약 위반,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,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
 - 수탁자 책임으로 정지 및 취소시 시설 운영에 사용한 모든 비품은 거창군으로 귀속
- 자. 손해배상(안 제11조)
 - 시설 및 비품 훼손 또는 망실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
- 차. 준용(안 제12조)
 - 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노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여성발전 기본법」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등 준용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
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
 - 「노인복지법」제37조·제4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
 - 「여성발전기본법」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
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·제49조·제7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·제3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
 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5조 및 제6조
- 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임
- 다. 그 밖에
 -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 - 입법예고(2007. 8. 28. ~ 9. 16.) 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·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·여성·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군 삶의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이 시설의 명칭은 "거창군 삶의 쉼터"라 한다. ②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-1번지에 둔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삶의 쉼터"란 거창군노인복지회관, 거창군여성복지회관, 거창군장애인 복지관을 통칭함을 말한다.
- 2. "위탁"이란 군수가 상호 계약에 따라 삶의 쉼터의 운영과 책임을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수탁"이란 군수로부터 삶의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.
- 제4조(주요시설) ①삶의 쉼터는 노인복지회관, 여성복지회관, 장애인복지관 으로 구분하여 설치·운영한다.
 - ②노인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.
 - 1. 사무실, 강당(대·소), 회의실, 생활·건강상담실
 - 2. 주간보호센터, 건강교실, 체력 단련실, 이·미용실
 - 3. 장기·바둑실, 노래연습장, 다목적휴게실, 식당
 - 4. 그 밖에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
 - ③여성복지회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여성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.
 - 1. 요리교실, 취미교실
 - 2. 자원봉사자실

- 3. 여성상담실, 인터넷실
- 4. 그 밖에 여성복지를 위한 시설
- ④장애인복지관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고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.
 - 1. 수 치료실, 식당, 상담실, 목욕탕
 - 2. 체력단련실, 진료실, 언어치료실, 심리치료실, 물리치료실, 주간보호실
 - 3. 사회교육실, 통합사무실, 보호 작업장
 - 4. 컴퓨터교실, 자원봉사자실, 녹음도서실, 강당
 - 5. 그 밖에 장애인복지를 위한 시설

제5조(주요사업내용) 삶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노인복지사업 : 노인문제 상담, 노인에 대한 교육·교양·여가 및 취미에 관한 사업,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- 2. 여성복지사업 : 여성문제 상담,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, 여성단체 활동 및 자원봉사 지원사업,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- 3. 장애인복지사업 : 장애인상담, 재활치료, 사회교육, 심리·언어 치료사업,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- 제6조(운영) ①삶의 쉼터는 군수가 관리·운영한다. 다만 삶의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삶의 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(이하 "수탁자"라 한다)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, 군수는 신청자 중사업실적, 자부담능력,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「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③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수탁자가 재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3월전까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시 특약으로 정한다.

- ④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7조(기구 및 인원) ①삶의 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원은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. ②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되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- 제8조(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) ①삶의 쉼터의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②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9조(수탁자의 의무)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 된다.
 - 2. 수탁자는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점검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 - 3.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을 재임대하거나 수탁자의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 - 4. 수탁자는 수탁기간의 만료 또는 수탁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3월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.
 - 5. 수탁자는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,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0조(위탁의 정지 및 취소) ①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
- 2.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- 3.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
- 5.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-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 해지를 합의 한 경우
- ②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수탁시설 관리·운 영에 사용된 부대시설, 장비,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거창군에 귀속된다. 다만, 수탁자와 그 귀속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제11조(손해배상)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삶의 쉼터의 시설 또는 비품 등을 망실, 훼손하였거나,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를 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,「노인복지법」,「장애인복지법」,「여성발전기본법」,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등을 준용한다.
- 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[별지]

거창군 삶의 쉼터 위탁운영 신청서

신 청 자	법인명칭		
	대 표 자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 소 (사무소소재지)	전화번호	
위·수탁			
운영기간			
위·수탁 관리목적			

위와 같이 거창군 삶의 쉼터(노인·여성·장애인복지관)를 위탁받아 관리·운영하고자 「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·운영 조례」제6조에 따라 신청 합니다.

붙임: 1. 사업계획서 1부

- 2. 법인등기부등본 1부
- 3. 법인의 정관 1부.

년 월 일

신청자 주 소:

법인명칭 :

대 표 자 : (인)

거창군수 귀하

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

제출연월일			2007. 9. 21.
제	출	자	거창군수

1. 제정이유

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는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(안 제2조)
 - ○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판매시설, 위락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
- 나. 미술장식의 설치 · 절차 등(안 제3조)
 - ○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건축물 착공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 제출, 심의 후 통보
- ○정부·지자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은 심의 생략다.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(안 제4조)
 - O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: 1/1000이상
 -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: 5/1000 이상
- 라. 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미술장식 설치 확인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위원회 구성(안 제7조)
 - O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
 - ○위촉위원은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·디자인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군수가 위촉, 문화관광과장과 도시건축과장은 당연직
 - O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

- 사. 위원회의 기능(안 제8조)
 - O미술장식의 가격, 예술성, 환경과의 조화,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의
- 아. 위원회 회의(안 제10조)
 - O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문화예술진흥법」제5조·제9조

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제23조·제24조·제25조,

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의4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그 밖에

(1) 신・구조문대비표 : 해당 없음

(2) 입법예고(2007. 6 14. ~ 7. 3)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) 군수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3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「건축법 시행령」제3조의4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.
 - 1.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)
 - 2. 업무시설
 - 3. 숙박시설
 - 4. 판매시설
 - 5. 위락시설
 - 6. 의료시설 중 병원
- 제3조(미술장식의 설치·절차 등) ①영 제24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미술장식을 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승인 후 군수에게 별지서식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거창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④군수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
 - ⑤정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을 미술장

- 식으로 설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⑥건축주는 미술장식에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.
- 제4조(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)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미술 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, 표 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 다.
 - 1. 영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: 1,000분의 1이상
 - 2. 영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: 1,000분의 5이상
- 제5조(미술장식의 가격 결정 등) ①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.
 - ②기증품이나 소장품을 미술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미술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6조(미술장식의 설치 확인)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 물의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7조(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구성) 영 제24조의3에 따라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, 평가를 위하여 거창군미술 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.
 -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②위원은 문화관광과장, 도시건축과장과 미술·건축·환경·공간·디자인 ·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 미술장식 심의에 필요한 경 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
 - ④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

- 은 임기로 한다.
-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- 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미술장식의 가격
 - 2. 미술장식의 예술성
 - 3.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
 - 4.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
 - 5.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
- 제9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.
 -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0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
 - ②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
 -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
- 제11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2.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제12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

위원에 대하여는 「거창군 위원회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]

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

	위 치	
건	건 축 주	성명 : 주소 :
축	대지면적	건축면적 연면적
개	층 수	최고높이 구 조
	용 도	외장재료 건축종별
요	허가일자	사용검사 예 정 일 총공사비
건 축	주 소	
설계자	사무소명	성 명 전화번호
	작 가 명	(인) 작 품 명 작품가액
0	전화번호	재료(색상) 규 격
술	작 가 명	(인) 작 품 명 작품가액
품	전 화 번 호	재료(색상) 규 격
	작 가 명	(인) 작 품 명 작품가액
개	전 화 번 호	재료(색상) 규 격
요	총설치수	조각 점. 회화 점. 기타 점. 계 점
	총 가 액	설치완료예정일

「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」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: 인

거 창 군 수 귀하

※ 첨부서류 : 뒷면 참조

※건축물중 일부만 미술장식 설치대상인 경우 총공사비는 당해 부분만의 공사비를 기재할 것

□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

- 1.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1부.
- 2. 작품의 공인기관 감정 평가서 1부(소장품 또는 기증품일 경우)
- 3. 미술장식 설치계약서 사본 1부.
 - 건축주와 작가 또는 대행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작가와 대행인의 주민등록번호 (또는 사업자 등록번호), 주소 및 연락처 등 정확히 기재
- 4. 작가경력서 사본 1부.
- 5.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도면(A3규격 횡으로 합철, 10부)
- ① 건축개요, ② 주위현황도, ③ 건축물투시도, ④ 미술장식 개요, ⑤ 건축물 배치도 및 조경계획도(작품위치 표기), ⑥ 작품설명서, ⑦ 작품사진(정면, 배면, 우측면, 좌측면), ⑧ 작품도면(규격표시, 정면도, 배면도, 우측면도, 좌측면도) ⑨ 건축물과 의 조화(원경, 근경)
- 6. 조각 등 입체조형물인 경우에는 작품모형 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1점, 회화나 서예 등 평면인 경우에는 작품사진(11 " × 14") 1매 제출
- 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,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
- 7. 미술장식 설치 비용 산출내역 1부.

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2007~ 36

제출년월일			2007. 9. 21.
제	출	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「도로법 시행령」이 2007. 1. 5.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따라 조정하여 도로 점용료 현실화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"거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"로 변경함
- 나.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조정(안 별표 1)
 - 도로점용료 연차별 정액제 조정
 - 평균 38%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기준 유지
 - 점용물의 종류 신설 및 수정(안 제1호부터 제3호)
 - · 돌출간판 신설, 진입로 ⇒ 진·출입로 등
 - 법명변경으로 인하여 근거법규명 수정 및 자구 수정(안 비고)
 - ·「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」
 - ⇒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「도로법」제43조제2항

「도로법 시행령」제26조의2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그 밖에

(1)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(2)입법예고(2007. 08. 27 ~ 2007. 09. 15) : 의견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안

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"를 "거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"로 한다.

제7조 중 "①도로를"을 "도로를"으로 하고 "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"를 "제5조에 따라"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	거창군 도로점용료징수 조례
제7조(점용료의 조정) ①도로를 계속	제7조(점용료의 조정) <u>도로를</u>
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	
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	<u>제5조에 따라</u>
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	
간 점용료보다 10%이상 증가하게	
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	
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2의 점용	
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	
으로 한다.	

[별표 1]

점용료 산정기준표(제5조 관련)

(단위 : 원)

				(근기 · 년, 단위 점 용 료						
점용물의 종류			점용 단위	기간단위	2007년	2008 년	2009 년	2010 년	2011 년	2012 년 아후
	전주, <u>가로</u> 등 기타 이와 -	유사한 것			<u>600</u>	<u>690</u>	<u>780</u>	<u>850</u>	<u>850</u>	<u>850</u>
1. 전주, 공 주저하 소	변압탑, 무선전화기지국,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,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, 교통량검지기, 주차메타기, 우체통, 소화전, 모래함, 제설용구함, 기타이와 유사한 것		1개	1년	900	1,030	<u>1,160</u>	<u>1,250</u>	<u>1,250</u>	1,250
<u>상시설물</u>	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	사한 것			<u>24,100</u>	<u>24,100</u>	<u>24,100</u>	<u>24,100</u>	<u>24,100</u>	<u>24,100</u>
	송전탑, 그 밖에 이와 유/	사한 <u>것</u>	점용 면적 1m²	1년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금액					
		지름0.1미터 이하		1년	<u>150</u>	<u>170</u>	<u>190</u>	<u>200</u>	<u>200</u>	<u>200</u>
		자름0.1미터 초과 0.2미 터 이하			300	<u>340</u>	<u>380</u>	<u>400</u>	<u>400</u>	<u>400</u>
	수도관, 배수관, 농업용 수관, 전기통신관, 가스 관, 송유관, 송열관, 전 기관, <u>작업구(맨홀)</u> , 전력 구, 통신구, 기타 이와 유사한 것	자름0.2미터 초과 0.4미 터 이하	길이 1미 터		<u>600</u>	<u>690</u>	<u>780</u>	<u>850</u>	<u>850</u>	<u>850</u>
		자름0.4미터 초과 0.6미 터 이하			900	1,030	<u>1,160</u>	<u>1,250</u>	1,250	<u>1,250</u>
		자름0.6미터 초과 0.8미 터 이하			<u>1,200</u>	<u>1,370</u>	<u>1,540</u>	<u>1,650</u>	<u>1,650</u>	<u>1,650</u>
		자름0.8미터 초과 1.0미 터 이하			<u>1,500</u>	<u>1,720</u>	<u>1,930</u>	2,050	<u>2,050</u>	<u>2,050</u>
		자림.0미터 초과 20미 터 이하			<u>2,250</u>	<u>2,580</u>	<u>2,910</u>	3,100	3,100	<u>3,100</u>
		자름20미터 초과 3.0미 터 이하			<u>3,750</u>	<u>4,300</u>	<u>4,860</u>	<u>5,200</u>	<u>5,200</u>	<u>5,200</u>
 수도관, 전력구 등 		지름3.0미터 초과			<u>5,250</u>	<u>6,020</u>	<u>6,800</u>	<u>7,250</u>	<u>7,250</u>	<u>7,250</u>
지하매설		지름0.1미터 이하		1년	200	<u>230</u>	<u>260</u>	<u>290</u>	<u>300</u>	<u>300</u>
물		자름0.1미터 초과 0.2미 터 이하			<u>450</u>	<u>510</u>	<u>570</u>	<u>600</u>	<u>600</u>	<u>600</u>
		자름0.2미터 초과 0.4미 터 이하	길이 1미 터		900	<u>1,030</u>	<u>1,160</u>	<u>1,250</u>	<u>1,250</u>	<u>1,250</u>
		자름0.4미터 초과 0.6미 터 이하			<u>1,350</u>	<u>1,540</u>	<u>1,740</u>	<u>1,850</u>	1,850	<u>1,850</u>
	지중정착장치(어스앵커), 암거, 기타 이와 유사한	자름0.6미터 초과 0.8미 터 이하			1,800	2,060	2,330	2,500	2,500	<u>2,500</u>
	것	자름0.8미터 초과 1.0미 터 이하			2,250	<u>2,580</u>	<u>2,910</u>	3,100	3,100	<u>3,100</u>
	터 이하 자름20미터 초 터 이하	자름1.0미터 초과 20미 터 이하			3,350	3,840	4,330	4,600	4,600	<u>4,600</u>
		자름20미터 초과 3.0미 터 이하			5,600	<u>6,430</u>	<u>7,260</u>	<u>7,750</u>	<u>7,750</u>	<u>7,750</u>
		지름.0미터 초과			<u>7,850</u>	9,010	10,180	10,850	10,850	10,850

		일시 설치한 것	표시	40)	100	110	120	120	110	1=0	
3. 광고탑, 광고판, 간 판(돌출간 판을 포함	광고탑, 광고판, 간판(<u>돌</u> 출간판을 제외한다)	(1월 미만 점용)	면적 1m²	1일	100	110	<u>120</u>	130	140	<u>150</u>	
		기타	표시 면적 1㎡	1년	<u>15,000</u>	<u>17,220</u>	19,460	20,700	20,700	20,700	
	돌출간판		표시 면적 1㎡	1년	9,900	<u>9,900</u>	9,900	9,900	9,900	9,900	
한대), 사 설안내표	사설 안내 표지			1년	12,500	14,350	<u>16,210</u>	17,250	17,250	17,250	
지, 현수막, 아취, 기타	현수막	제사나 종교행사의 용 도로 일시 설치한 것	표시 면적	1일	<u>50</u>	<u>50</u>	<u>50</u>	<u>50</u>	<u>50</u>	<u>50</u>	
이와 유사한 것	-, ,	기타의 용도	1m²		<u>100</u>	<u>110</u>	<u>120</u>	<u>130</u>	<u>140</u>	<u>150</u>	
	اخ] ع	도로횡단	표시 면적	1년	30,000	<u>34,440</u>	<u>38,920</u>	<u>41,400</u>	41,400	<u>41,400</u>	
	<u>아치</u>	기타	면적 1m²	1년	<u>15,000</u>	<u>17,220</u>	<u>19,460</u>	20,700	20,700	<u>20,700</u>	
4.주유소, 주차장,여		1층인 건축물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				
객자동차 터미널,화 물터미널,	カラ ロ	2층인 건축물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				
물터미널,	건축물	3층인 건축물	젂용		토지가격에 0.06를 곱한 금액						
라 중 사 수 리소, 승강		4층이상인 건축물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65를 곱한 금액						
자동차수 리소,등적 대,화동자 기자,	진·출입로				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						
소 기타 이와 유사 한 시설	_ 기타 와 유사 기타	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				
5.철도, 궤도	5.철도,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		점용 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4를 곱한 금액						
6.지하상가,		1층인 건축물	점용 면적		토지가격에 0.015를 곱한 금액						
지하실, 통	건축물	2층인 건축물			토지가격에 0.017를 곱한 금액						
로, 기타이와 유사	고즈 마느 기원에 서원된	3층 이상인 건축물	면적 1m²	1년	토지가격에 0.019를 곱한 금액						
한것	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기타				토지가격에 0.007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						
7. 노점,자		1 -11									
동판매기, 상품진열 대 기타	버스표판매대,구두수선대		점용 면적	113	토지가격에 0.01를 곱한 금액						
대 기타 이와 유사 한 것	노점,자동판매기,상품진열대		刊句 1m²	1년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				
8. 공사용 판자벽, 발 판, 대기소 등의 공사	일시 점용한 것		점용 면적 1㎡	1일	100	110	<u>120</u>	130	140	<u>150</u>	
등의 공사 용 시설 및 재료	기타		점용 면적 1m²	1년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금액						
	9.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.점포.창고.자동 차주차장.광장.공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		점용 면적 1m²	1년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						
10.제1호 내지 제9) 동업·주택 및 식물재배		점용 면적		토지가격에 0.005를 곱한 금액						
호외의 공 작물,물건 및 시설				1년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						

※ 비 고

- 1.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<u>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</u> <u>률」에 따른</u>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이상인 경우 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.
- 2.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,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다.
- 3. 점용면적, 점용물의 길이,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.
- 4. "표시면적"은 광고탑, 광고판, 간판 등의 표시면적의 면적을 말한다.
- 5.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,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100원 단위로, 그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.(기간단위 1년인 경우의 예: 1,445원=1,400원, 1,995원=1,900원)
- 6.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,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.
- 7.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, 통신시설관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,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 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.
- 8.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다.